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리며, 매주 목요일에 주간입법동향을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주요 법안 동향

법안 종류	키워드	주요 법안	주요 내용
발의안	공정거래	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은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에 거래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업자는 법에서 규정한 사유가 아니면 이를 거절 하지 못하도록 함. 대리점 단체 구성을 통해 공급업자와 협의하도록 하며,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보복조치를 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 부과.
	기업	②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픈마켓(온라인장터) 사업자가 입점하는 전자상거래업체의 '신고' '등록' '허가' 등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국회 계류안	기업	③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백화점 등 유통매장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지정.
공포 법령	건설/부동산 중대재해	④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사현장 등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강판과 심재(心材)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
입법/행정 예고	기업	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내년 5월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회사와의 물류·IT서비스 거래시 업종별로 구분해 공시하고 상품·용역거래는 매분기별 거래금액을 공개해야 함.

1. 발의

*각 법률안 및 검토보고서 확인을 위해서는, 법률안 밑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1	 <p>김한정 (더불어민주당)</p>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한 대리점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에서 비롯된 불공정 관행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대리점의 거래상 지위와 생계 안정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계약의 갱신, 대리점거래계약 해지의 제한, 대리점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법에서 금지한 보복조치가 있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5조의2 · 제5조의3 · 제5조의4 신설, 안 제18조 · 제23조 · 제25조제1항 · 제34조제2항 등). <p>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J1K0N7O2O6M1B6H5S2N4Q0T9K4K8</p>		21.09.01. 제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2	 <p>양정숙 (무소속)</p>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 최근, 결제플랫폼 ‘머지포인트’의 포인트 판매 중단 및 서비스 축소에 따른 환불사태로 인해, 머지포인트를 구입하였던 소비자와 머지포인트를 결제수단으로 상품·서비스의 제공을 약속한 가맹점의 피해가 속출하였음.</p> <p>머지포인트를 판매중개한 이커머스(e-commerce)업체들은 타 이커머스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머지포인트가 사업에 필요한 허가를 얻은 사업자인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개하였음.</p> <p>소비자들은 머지포인트에 대한 인지도나 신뢰가 낮음에도 판매를 중개한 다수의 이커머스를 신뢰하여 머지포인트를 구입하였지만, 정작 이커머스 업체들은 입점업체가 적법하게 신고된 것인지, 신뢰성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하지 않아 ‘머지포인트’와 같은 무등록 전자지급수단이 소비자에게 유통되게 된 것임.</p> <p>현행 전자상거래법 상, 이커머스업체들은 입점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있으나, 사업 관련 법령 상 갖추어야 하는 신고·등록·허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 이를 확인하고 있지 않으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입점사업자들에게 신고·등록·허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입점사업자의 반발과 혼란이 우려됨.</p> <p>이에, 전자계시판서비스 제공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업자가 사업영위를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신고·등록·허가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제13조제1항·제20조제2항, 제45조제3항제1호의2 신설).</p>	<p>뉴스1 21.08.29.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방지법 발의… ‘신고·등록·허가’ 확인 의무</p> <p>https://www.news1.kr/articles/?4417584</p>	21.08.30. 제안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F1T0R8X2F4X1J7X2W3M2U2N7P2D9

2. 국회 계류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3	 <p>이동주 (더불어민주당)</p>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및 대형마트 영업제한 등의 규제를 도입하였음. 2010년 전통시장 1km 이내에서의 등록제한 규제를 신설했고, 2012년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신설하였음. 그러나 최근에는 복합쇼핑몰과 같은 초대형 유통매장의 진출 확대로 골목상권과 영세상인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보호 및 대·중소 유통업계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뿐 아니라 복합쇼핑몰과 같은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 및 영업 제한 등의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과 의무휴업 규정에 유통업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취지가 담겨있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과 면세점(보세판매장)과 같은 대규모 유통매장의 경우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장시간 근로와 야간 교대제 근무가 확대되는 등 근로자 건강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백화점과 면세점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며, 추석과 설날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게 하는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함. 이와 더불어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상품공급점이나,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규모가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에 준하는 기업이 직영하거나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를 준대규모점포로 포함해 영업시간 제한 등의 법적규제를 받게 하여 주변지역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p>이데일리 21.08.27. 이커머스 급성장하는데.. 대형마트는 10년째 '영업 규제' 족쇄</p> <p>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56246629151584&mediaCodeNo=257&OutLnkChk=Y</p>	<p>20.06.26 제안</p> <p>20.07.28. 상임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p> <p>20.11.17. 소위 상정</p> <p>20.11.26. 소위 상정</p> <p>21.02.04. 소위 상정</p> <p>21.02.22. 소위 상정/ 축조심사</p> <p>21.03.11. 소위 상정/ 축조심사</p> <p>21.09.08 소위 상정</p>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p>나. 준대규모점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직영하거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와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상품공급점을 포함하도록 함(제2조제4호 라목, 마목 신설).</p> <p>다. 지역협력개발서 작성 시 지역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활성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적 공표, 개선권고, 이행명령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8조의2, 안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p> <p>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역협력계획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13조의4제3호).</p> <p>마.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과 관련된 규제의 존속기한을 폐지함(안 제48조의2 삭제).</p>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F0G0P6D2W6C1C6I2R2G2A0T7F9X2

3. 공포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4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p>■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p> <p>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마감재료 설치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건축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이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941호, 2021. 8. 10. 공포, 2022. 2. 11. 시행)됨에 따라 건축사보를 배치해야 하는 경우를 공장, 창고시설 등에서 난연재료가 아닌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단열재가 외기(外氣)에 노출되는 경우로 정하는 한편,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강판과 심재(心材)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출처: 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00884,20210903)</p>		21.09.03. 공포 22.02.11. 시행

4. 입법/행정 예고 법안

번호	소관기관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5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2020. 12. 29. 전부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1. 12. 30. 시행)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2021. 6. 4. 입법예고) 제33조에 따른 동일인의 국외 계열회사 공시 내용을 반영하고, 소규모 비상장회사 공시의무 면제, 공익법인과의 거래 현황 공시 신설 등 자체 공시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령 정비 차원의 문구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동일인의 국외 계열회사 공시제도 신설(안 제1조,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제3항제1호, 제5조~제11조) 1) 규정의 제명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2) 동일인의 공시의무 도입에 따라 규정의 목적을 변경 3) 동일인은 공시의무 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하고, 불성실이행행위에 대해 제재조치 명시 4) 공시의무사항은 일반현황, 주주현황, 출자현황, 순환출자현황 5) 공시기준일 및 시기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일을 기준으로 매년 5월 31일 연1회 공시 6) 공시절차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7) 수탁기관의 업무 등을 명시 나. 소규모 비상장회사 공시의무 면제(안 제2조제2항) 1)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해 비상장회사 공시의무를 면제하되, 청산 또는 1년 이상 휴업중인 경우를 제외한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 다.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공시대상 확대(안 제4조제1항제4호바목) 1)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제47조제1항에서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집단현황 공시 중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공시대상 확대 		21.09.03. ~ 21.09.23.

번호	소관기관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p>라. 상호채무보증 용어 정비(안 제4조제1항제4호하목) 1)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및 실제 공시상황과 달리 본 규정에서 상호채무보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 채무보증으로 용어 정비</p> <p>마. 공익법인과의 거래 현황 공시 신설(안 제4조제1항제4호러목, 제2항제6호, 제5조제1항제1호)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동일 집단 공익법인과 자금, 자산, 상품·용역 거래시 그 현황을 연 1회 공시</p> <p>바. 기업집단현황공시 공시기준일 합리화(안 제4조제3항제3호) 1) 계열회사 변동내역, 임원 및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공시기준일을 전년도 기업집단지정일 다음 날부터 금년도 기업집단지정일까지로 개선</p> <p>사. 4분기 기업집단현황 공시기한 합리화(안 제5조제2항제2호) 1) 기업집단현황공시 분기별 공시기한을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로 변경</p> <p>아. 주요주주의 범위 설정에 따른 공시 반영(안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 1)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따라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시에도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를 하도록 변경</p> <p>자. 법령정비위원의 문구 개정 1)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령안과 조문을 일치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취지에 맞춰 문구를 정비하는 한편, 전자공시시스템 운영주체 명확화 등</p>		
			출처: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admmp/36110?announceType=TYPE6&mappingAdmRuSeq=2000000287114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및 칼럼

[한겨레][사설]'안전관리 소홀' 회사에 법정 최고형 선고한 법원(2021.09.02)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10254.html>

주요내용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체에 법정 최고액의 벌금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재해법이 제정돼 내년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법원이 이 같은 사고에 대해 엄벌 의지를 보인 의미 있는 판결. 이번 판결은 형량 자체를 떠나 산업재해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인식과 접근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음.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산업현장의 구조적, 총체적인 안전조치 결여로 인해 작업 현장에 내재한 고도의 위험이 현실화해 근로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이라고 지적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처벌규정이 한층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도 법을 집행하는 검경과 법원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 일터에서 벌어지는 안타까운 죽음의 고리를 끊기는 어려움.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심판자인 법원이 엄정한 법 적용 의지를 계속해서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음.

[파이낸셜뉴스][기사]“더 세계” “너무 세” 여야, 중대재해법 온도차 뚜렷(2021.09.02)

<https://www.fnnews.com/news/202109021826027826>

주요내용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여야 대선주자 간 입장차는 확연히 엇갈림. 민주당 경선후보는 5만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것 외에도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 법을 강화하자는 주장. 반면 국민의힘 경선후보들은 해당 법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처벌조항이 과도해 오히려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봄.

[한겨레][기사]철강 산업재해 사망, 절반은 피할 수 있었다(2021.09.03)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10381.html>

주요내용 최근 5년간 발생한 철강산업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절반은 위험요인을 고려한 작업계획을 수립·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박화진 노동부 차관은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산업 대표이사와 만나 ‘철강산업 안전보건 리더 회의’를 열고 당부를 전했으며, 포스코는 앞으로 현장 안전관리 인력을 550명까지 증원할 계획을, 현대제철은 안전 관련 예산을 16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을 밝힘.

박차관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기업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제거해 개선할 수 있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안전 조직과 예산에 전폭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경영진은 안전경영 방침이 현장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동자도 안전수칙을 잘 지켜 안전한 사업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함.

담당 변호사 및 전문인력

입법전략센터



차동언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0

E : decha@draju.com



이승철

고문

T : 02-3016-8706

E : sclee@draju.com

공정거래부문



구상모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49

E : smkoo@draju.com

기업부문



안호봉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74

E : hbahn@draju.com

건설/부동산팀



전재기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78

E : jkjun@draju.com

중대재해 자문 그룹



김영규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3

E : ykkim2@draju.com